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4-2-7

규정번호 4-2-7
제정일자 2006.3.1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34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0조,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강의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의전임교원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 처우,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강의전임교원의 자격은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다만, 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수한 분야와 외국어회화 등 실기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개정 2019.12.09.)
2.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인
3.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직급) 강의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육, 연구 및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5조(의무) ① 강의전임교원은 계약에 의한 주당책임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연구 및 학생지도, 학사업무 협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08.07.)

② 강의전임교원의 겸직 및 외부출강 허가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및 사외이사겸직에관한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04.26., 2019.07.30., 2020.08.31)

제6조(임용절차) ① 강의전임교원의 임용은 법인 인사규정 제7조의5(임용절차) 1항에 따라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회화 등 실기,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 및 예·체능계의 경우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임용 및 전형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한다.(개정 2015.03.16)

제7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강의전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4.10.21)

② 강의전임교원이 재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03.16)

③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

어야 한다.(신설 2015.03.16)

제7조의2(재임용 기준) ① 강의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중 재임용 평가 직전 3개 학기 중 2회 이상의 강의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3.16., 2017.10.25)

② 강의전임교원은 재임용 평가표(별표1) 점수가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 강의전임교원은 70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3.16.)

제7조의3(승진임용) ① 강의전임교원의 승진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인사규정에 의하며 우리대학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08.07.)

② 강의전임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용계약) ① 임용 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개인별로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내역
3. 강의 교과목 및 책임시간과 강의담당 교과목명
4.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

③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의2(재계약) ① 교무처장은 강의전임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내의 강의평가표 및 재임용 평가표를 제출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3.16)

②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되는 강의전임교원에 대하여 제6조의2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임용기간 만료 60일 전에 개인별로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02.21.)>

제9조(신분보장) ① 강의전임교원은 임용기간중 우리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

② 강의전임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임용취소 및 계약해지) 강의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명지학원 인사규정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 또는 이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교 또는 법인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

7. 성범죄 등으로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단,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7.24.)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신설 2015.03.16)

제10조(휴직) 강의전임교원은 임용기간중 휴직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11조(처우) 강의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법인 정관 및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9> <생략>

<30> 강의교수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8조①, 제8조의2①·②, 제11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1>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2년 8월 27일 이전에 임용한 강의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

용한다.

1.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11조에 의한 교육업적 년간 점수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0점 이상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8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012년 9월 1일부터 계약 종료시까지의 강의평가 점수와 재임용평가표의 점수는 동 규정 제6조의2를 충족하여야 한다.

3. 2013년 3월 1일부터는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한 강의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에 의한 교육업적 년간 점수가 2013년 8월 31일까지는 6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강의평가 점수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강의평가 점수가 학과평균이상이어야 한다.

2. 2013년 9월 1일부터 계약종료시까지의 재임용평가표의 점수는 동 규정 제6조의 2를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별표 1>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2제3항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재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9> (생략)

<10>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점산정기준]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1> - <25>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 제7조의3)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의2제7호)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1항)

②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교원의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5> (생략)

<교육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봉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6>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4-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가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7> - <17> (생략)

[별표1](개정 2015.03.16.,2016.3.1.,2020.05.25.,2023.03.30.,2024.4.1)

강의전임교원 재임용 평가표

분야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상한
강의 평정	강의시수 및 휴, 보강	강의담당시수	100점 + [(강의담당시수 - 책임시수) × 10점]	100
		강의일수	[30점 + (강의일수 - 3 일) × 10점]의 2개학기 합산	80
		휴강 및 보강	50점-(무단결강 및 휴·보강 고지기준 미준수 일수× 10점)	50
	강의진행	강의계획표 입력	40점 - [미입력과목 수 × 10점]	40
		담당교과목수	담당교과목 수 × 20점	40
		성적 및 출석부 입력, 제출	50점 - (미입력과목 수 + 미제출과목 수) × 10점]	50
		사이버 강의	과목당 20점(학기당 1과목)	60
		강의자료 온라인탑재 및 강의공개	과목당 20점	
		야간 및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강의	담당과목 수 × 20점	
	강의평가	강의평가 점수	개인강의평가 (학기별 합산)	400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법 개발 및 활용	1건당 × 10점	20
	직무역량	직무역량 교과목강의	교과목 수(NCS기반, MJC기반) × 20점	40
학생지도	학습지도	튜터링지도	산정기준 참조	30
	입상지도	경기, 경연공모, 작품대회 등	입상건수 × 10점	10
근무 평정	근무태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산정기준 참조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산정기준 참조	
		학습활동	산정기준 참조	60
		입학활동	산정기준 참조	20
		대학기여활동	산정기준 참조	20

<평가 산정기준>

(개정 2015.03.16., 2016.3.1., 2017.07.14.,
2018.08.27.2019.02.25.,2020.08.31.,2023.03.30.,2023.12.11.,2024.4.1)

1. 평가대상 기간
 가. 근무평정 : 금회 계약기간
 나. 강의평정 및 학생지도 : 전체 임용기간 중 재임용 평가직전 2개 학기

2. 강의평정
 가. 강의시수 및 휴,보강
  1) 강의담당시수
   ① 산정예시 : 강의전임교원 책임시간이 15시간 일 때, 평교수 A가 1학기에 15시간, 2학기에 15시간을 강의했을 경우, 조정된 강의시수의 연간합계가 30이고 연간 책임시수가 30이므로 100 + [(30 - 30) × 10] = 100점이 되며, 최대100점까지 인정한다.(본과정 강의, 산업체위탁교육 강의, 전공심화과정 강의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0.08.31.)
   ② 학과 또는 행정부서 사정으로 강의담당시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과 또는 행정부서장의 요청으로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강의일수
   ① 강의일수는 주당 강의일수를 의미한다.
   ② 학과 또는 행정부서 사정으로 주3일 강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과 또는 행정부서장의 요청으로 60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휴강 및 보강 : 휴강 및 보강의 감점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 강의진행
  1) 강의계획표 입력 : 학사지원팀에서 지정한 마감일 이전에 입력된 것만 인정한다.
  2) 담당교과목수
   ① 평가 대상 기간 중 담당한 교과목 수를 말한다.
   ② 학기별 동일 교과목은 1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학과 또는 행정부서 사정으로 담당교과목 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과 또는 행정부서장의 요청으로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성적 및 출석부 입력, 제출
   ① 미입력 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지정한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미제출사항은 출석부 및 성적표의 교무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원격(가상)강의 : 우리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원격(가상)강의를 의미한다.(개정 2023.12.11.)
   ① 원격강좌 15주차 각 주차별 2일 이상 원격(가상) 강의 사이트에 접속 후 강의실에 입장한 경우 평점을 인정한다.
   ② 과목당 2개 분반 이상의 원격(가상)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위 ①의 조건을 모든 분반이 만족하여야 평점을 인정한다.

5) 강의자료 온라인탑재 및 공개강의

① 강의자료 및 강의 컨텐츠(강의내용의 일부 동영상 및 컨텐츠 제작 등)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인터넷 사이트(이클래스, 인터넷디스크, 외부 소셜네트워크)에 탑재한 것을 의미하며 원격(가상)강의용 자료는 제외된다.(개정 2023.12.11.)

② 강의공개 : 온라인 및 강의 컨텐츠 형태로 일반인에게 한학기 수업의 80%이상 공개된 것

6) 야간 및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강의

우리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한 평생교육본부 및 계약학과 강의, 야간강의(산업체위탁교육 강의, 전공심화과정 강의 등) 등을 의미한다.(개정 2025.3.31.)

다. 강의평가(개정 2015.12.03., 2018.08.27.)

1) 강의평가 점수

① 강의평가는 학기별 계산하여 학기당 개인평균평점×2하여 그대로 점수화한다.

② 개인평균평점 = ∑(강좌별 종합점수) / ∑(강의평가 과목 수)

③ 학사지원팀에서 시행하는 평가결과만 반영한다.(개정 2023.12.11)

④ 개인별 평균점수는 전공과 교양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학과소속 강의전임은 개인별 전공평균점수를 반영하고, 교양 또는 행정부서 소속 강의전임은 개인별 전체 교과목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라. 교수학습방법(개정 2015.12.03., 2018.08.27., 2019.02.25., 2021.11.29.,2022.06.08.,2023.03.30)

1) 교수학습 개발 및 활용

①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Teaching Table, 강의촬영분석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대면강의촬영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40분 이상의 강의를 촬영하여 수업분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교수학습법 연구 공모과제의 경우, 교수학습법 연구 및 적용을 위한 교내외 대회 등을 포함

③ 혁신교수법의 경우, MJC-ILC 등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서 매학기 교수학습센터에 신청한 수업 및 MJC-ILC(+)인증 교과목에 한함(MJC-ILC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MJC-ILC+ 운영지침, MJC-ILC(+) 인증제 운영지침 참조)(개정 2023.12.11.)

마. 직무역량 :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하여 강의한 직무역량 교과목(NCS기반, MJC기반)의 수를 의미한다. (신설 2016.3.1., 개정 2020.05.25., 2023.03.30)

3. 학생지도

가. 학습지도

1) 튜터링 지도(개정 2015.12.03., 2016.3.1., 2022.06.08)

①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멘토활동 및 튜터링 지도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과정 멘토는 1년(2개학기)를 활동해야 인정되고(30점) 사정상(휴직 등)의 사유로 1학기를 진행할 경우 15점 인정 가능

② 평생교육 재학생(계약학과 포함)의 멘토는 학기별 활동 인정 가능하며 튜터링 지도는 담당교과 교수로서 조별면담 및 학습지도에 참여

2) <삭제(2023.03.30.)>

나. 입상지도

1) 경기,경연공모,작품대회 등

① 학생을 지도하여 경쟁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입상에 기여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근무평정

가. 근무태도

1)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50점

②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 -30점

③ 벌금 등(회당) : -10점

2)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

①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 -60점

② 정직 : -50점

③ 감봉 : -40점

④ 견책 : -30점

⑤ 경고(회당) : -20점

⑥ 주의(회당) : -10점

3) 학습활동(평점상한 60점, 건당 10점)

① 교내 학술강연 및 교양강좌 : 우리대학에서 인정한 각종 교내 강연회에서 강연한 경우 인정한다.

② 교내의 각종연수 및 특강참석 :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특강에 참석한 경우 인정한다.(학생대상으로 대학에서 인정하는 특강에 참석한 경우 포함 - 2건 제한)

③ 교내 예배 참석 : 신년교례예배, 개강예배,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예배에 참석한 경우 인정한다.

④ 교내 각종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건당 30점을 가점한다.(신설 2016.3.1.)

4) 입학활동(평점상한 20점)

① 입학감독 및 심사,진행위원 : 우리대학 입학전형기간 중 입시감독 및 심사,진행위원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당 10점으로 인정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 (개정 2025.3.31.)

② 입학홍보 활동 : 우리대학 및 학과 입학홍보를 위한 고교방문 활동 또는 교내·외의 입시설명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 한하며 건당 10점으로 인정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 (개정 2025.3.31.)

5) 대학기여활동(개정 2023.12.11.)

① 대학발전 및 대외교류사업 참여 : 우리대학 발전 및 대외교류사업(사업계획서작성·발표, 국제교류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인정하고 건당 10점으로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② 산학협력처에서 지원받은 사업, 학과행사 및 회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0.)